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의 장	
라		



제2200호 2023년 4월 28일(금)

	차 례
입법예고	
	고 제2023-1209호 「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」 규칙안 입법예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고 시	
	시 제2023-152호 2023년도 파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4 시 제2023-154호 도로명주소 고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
회					
람					

발 행 : 파 주 시

「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4월 28일

파 주 시 장

1. **자치법규명:** 「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」일부 개정 규칙안

2. 개정이유

- 파주시민이 동화경모공원 이용 시 사전에 유족이 시청을 방문하여 사용자격 확인, 허가증 발급 등을 하는 불편한 행정 절차가 필요했으나, 규칙개정을 통해 단순업무인 사용자격 확인은 동화경모공원에 일임 및 시에 반기별 보고로 변경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사용허가증 발급 절차를 삭제하여 파주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
-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(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-6191, 2022.12.08.)에 따라 본적 등 현재 규칙에 남아있는 폐지된 호적법 상의 용어를 최초 등록기준지 등으로 수정하여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`본적', `원적'을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맞는 `최초 등록기준지'로 변경(안 제3조)
 -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개선방향 예시에 따라 `최초 등록기준지

(구 호적이 있는 경우 최초 본적)'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

- 나. 파주시의 동화경모공원 사용자격 확인과 사용허가증 발급 절차 삭제(안 제4조)
- 다. 법인의 사용자 자격 확인 및 파주시에 사용현황 보고 추가(안 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)
 - 반기별 보고를 통해 사용현황 점검 및 미비한 사항은 시정요구
- 4. 자치법규안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: 2023년 5월 17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FAX 등

- 자치법규정보시스템(http://www.elis.go.kr) '입법예고'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

다. 기재내용: 주소·성명·생년월일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: 파주시장(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팀)

○ 주소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(우 10932)

○ 전화: 031-940-2494 / FAX 031-940-440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	「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」
	일부개정 규칙안
○ 성명(단체	명):
○ 주	소:
○ 생 년 월	일:
○ 저 화 번	ऽं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고

파주시 고시 제2023-152호

2023년도 파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

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·의결된 2023년 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28일

파 주 시 장

□ 2023년도 파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제3회 추경예산	제2회 추경예산	증 감 액	증감률
합계	2,059,748,753	2,059,748,753	-	0.00%
I. 일 반 회 계	1,709,488,266	1,709,488,266		0.00%
Ⅱ. 특별회계	350,260,487	350,260,487		0.00%
가. 기타특별회계	101,146,028	101,146,028	_	0.00%
○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2,413,816	2,413,816		0.00%
○ 의료급여	5,945,364	5,945,364	_	0.00%
○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	94,750	94,750	-	0.00%
○ 공영개발사업	319,660	319,660	-	0.00%
○ 교통사업	5,262,758	5,262,758	-	0.00%
○ 주치장관리	17,769,777	17,769,777	-	0.00%
○ 농어업소득지원사업	888,448	888,448	-	0.00%
○ 폐수처리사업	68,451,115	68,451,115	-	0.00%
○ 폐기물처리시설	340	340	-	0.00%
나. 공기업특별회계	249,114,459	249,114,459	-	0.00%
○ 상수도사업	109,848,344	109,848,344	-	0.00%
○ 하수도사업 	139,266,115	139,266,115	_	0.00%

파주시 고시 제2023-154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4. 28.

파주시장

○ 도로명주소 :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652번길 93-112 등 13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	
(별지참조)					

[※]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(☎940-4891~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► 도로명주소는 2023. 4. 28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▶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►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 청할 수 있습니다.
- ►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▶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 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